

2005
(상)

2005년도(상)

정보 ·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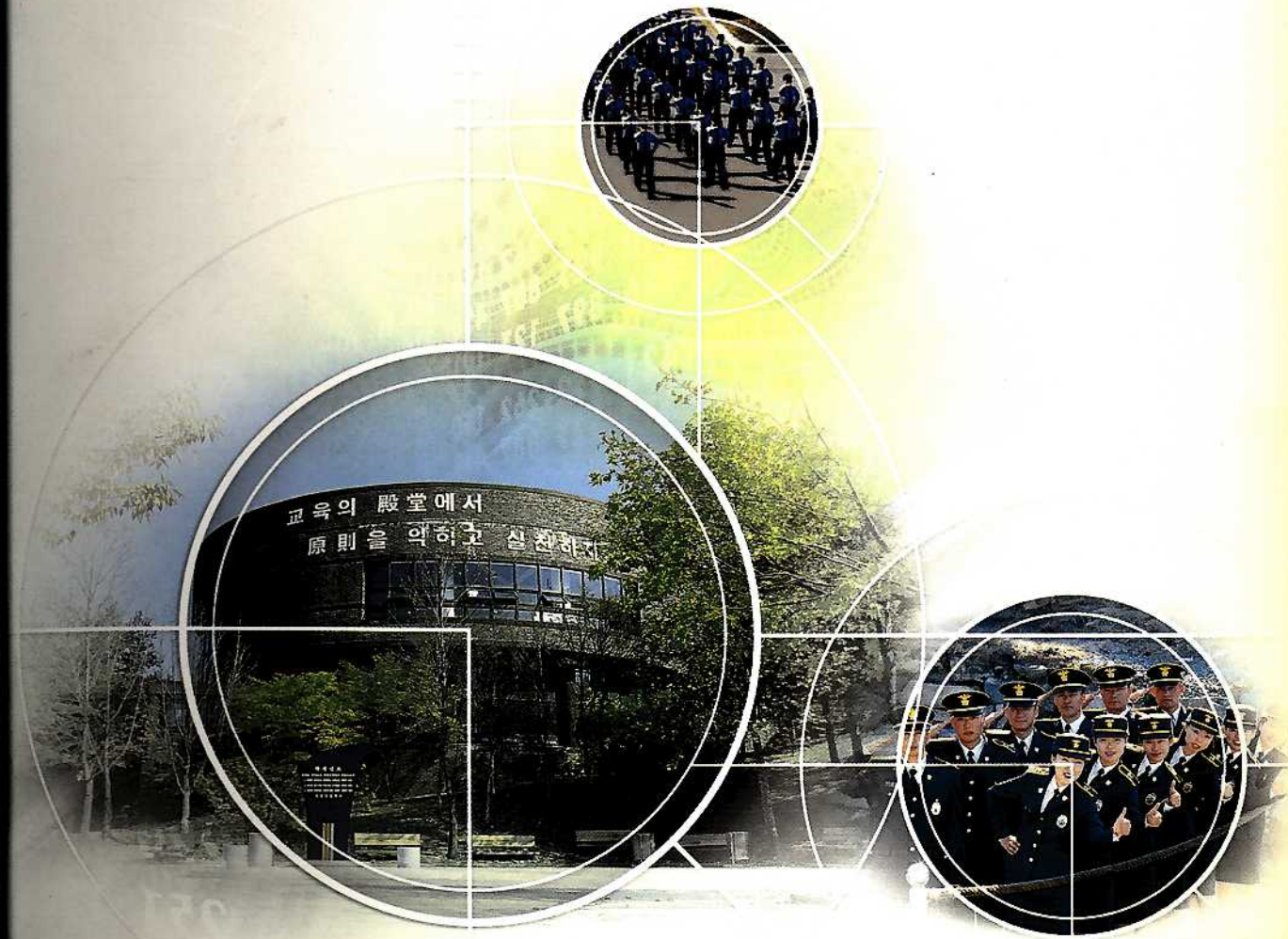
정보 · 보안



중앙경찰학교
Central Police Academy

380-756 충북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95
<http://www.ncpa.go.kr>
Tel : (043)840-9114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Central Police Academy

校 訓

知德 · 正義 · 垂範

학 생 신 조

우리는 영예로운 중앙경찰학교 학생으로서

1.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하는 지혜로운 경찰이 된다.
1. 어떠한 불의에도 대항하는 용기있는 경찰이 된다.
1. 어떠한 부패에도 물들지 않는 고결한 경찰이 된다.



경 찰 헌 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 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경 찰 서 비 스 헌 장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서비스현장

우리 중앙경찰학교는 지덕·정의·수범의 교훈 아래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신입경찰관을 육성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항상 교육생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교육생·교수·학교가 하나되어 열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 우리는 언제나 새롭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편리하고 청결한 교육환경과 시설을 유지하여 쾌적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 우리는 불편·불만 사항을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정 보 · 보 안

중앙경찰학교
Central Police Academy

목 차

第1編 情 報

第 1 章 情報理論

第 1 節 情報·諜報의 概念 및 重要性	15
I. 情報	15
1. 情報の 概念	15
2. 情報の 特性	16
II. 諜報	18
1. 諜報의 概念	18
2. 諜報의 特性	18
III. 資料, 諜報, 情報의 比較	19
IV. 情報の 重要性	19
第 2 節 情報の 分類	20
I. 性質에 따른 分類	20
1. 戰略情報	20
2. 戰術情報	21
3. 防諜情報	21
II. 使用主體에 따른 分類	21
1. 內部情報	21
2. 外部情報	21
III. 入手形態에 따른 分類	22
1. 直接情報	22
2. 間接情報	22
IV. 要素에 따른 分類	22
1. 政治情報	22

2. 經濟情報	23
3. 社會情報	23
4. 軍事情報	24
5. 科學情報	24
6. 產業情報	24
V. 對象에 따른 分類	24
1. 消極情報(保安情報)	24
2. 積極情報	25
VI. 機能에 따른 分類	25
1. 基本情報	25
2. 現用情報	25
3. 判斷情報	26
VII. 警察業務에 따른 分類	26
1. 一般情報	26
2. 犯罪情報	26
3. 保安情報	27
4. 外事情報	27
VIII. 其他	27
第3節 情報의 循環	27
I. 情報循環의 意義	27
II. 情報의 要求段階	28
1. 概念	28
2. 要求過程	28
3. 要求方法	29
III. 諜報의 蒐集段階	30
1. 概念	30
2. 蒐集計劃	30
3. 出處開拓	31
4. 蒐集方法	32
5. 諜報蒐集 要領(技法)	33

6. 諜報報告(傳達)	34
IV. 情報의 生産段階	35
1. 概念	35
2. 生産過程	36
V. 情報의 配布段階	37
1. 概念	37
2. 配布의 原則	37
3. 配布手段	39
第4節 情報警察	39
I. 情報警察의 意義	39
1. 實質的 意味의 情報 警察	39
2. 形式的 意味의 情報 警察	40
II. 情報警察의 任務	40
1. 見聞蒐集 및 處理	40
2. 危害 要素의 事前除去	40
3. 施策資料 提供	40
III. 情報警察의 特性	40
1. 目的	40
2. 活動	41
3. 手段	41
4. 保護法益	41
IV. 情報警察官의 資質	41
1. 基本資質	41
2. 姿勢	43
V. 情報警察의 組織	44
1. 警察廳	44
2. 地方警察廳	44
3. 警察署	44
VI. 北韓 및 外國의 情報機關	44
1. 北韓의 情報機關	44

2. 美國	45
3. 英國	46
4. 日本	46
5. 中國	46
第 5 節 見聞蒐集 및 報告	46
I. 見聞蒐集의 意義	46
II. 關聯規定	47
III. 見聞蒐集의 對象	47
IV. 見聞 蒐集 者의 姿勢	48
V. 用語 解說 및 蒐集 基準量	50
VI. 見聞蒐集 報告에 대한 處遇	50
VII. 蒐集된 見聞處理過程(지구대 基準)	51
VIII. 見聞報告書 作成要領	51
IX. 보고서의 종류	55

第 2 章 採證 및 情報記錄

第 1 節 採證	56
I. 採證의 意義 및 重要性	56
II. 關聯規定	56
III. 採證要員의 姿勢	57
IV. 採證計劃 樹立	57
V. 採證의 실제	58
VI. 採證 寫眞帖 製作	61
VII. 採證資料의 判讀	63
第 2 節 情報記錄	64
I. 概念	64
II. 關聯規定	64
III. 記錄의 管理	65

第 3 章 身元調査

I. 身元調査의 意義	68
II. 身元調査의 目的	68
III. 關聯規定	68
IV. 區別概念	69
V. 身元調査 對象(보안업무규정 제31조)	69
VI. 身元調査 機關	70
VII. 身元調査	70

第 4 章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集會및示威에 관한法律	71
-------------------	----

第 5 章 火焰瓶使用等の處罰에관한法律

I. 序論	82
II. 條文 解說	82

第2編 保安

第 1 章 保安警察

第 1 節 序說	91
1. 國家安全保障의 意義	91
2. 保安警察의 意義	91
第 2 節 職務範圍	92
第 3 節 特徵	93
1. 性質上 特徵	93
2. 手段上 特徵	94

第 2 章 國家保安法

第 1 節 總 論	95
1. 國家保安法의 本質	95
2. 國家保安法의 目的	97
3. 國家保安法의 特性	97
第 2 節 各 論	100
1. 反國家團體의 意義	100
2. 目的遂行罪 中 間諜罪(第4條 第①項 第2號 前端)	102
3. 國家機密 探知·蒐集·漏泄·傳達·仲介(第4條 第①項 第2 號後段)	105
4. 自進支援·金品收受罪(第5條)	106
5. 潛入·脫出罪(第6條)	107
6. 讚揚·鼓舞 等의 罪(第7條)	109
7. 會合·通信罪(第8條)	115
8. 便宜提供罪(第9條)	116
9. 不告知罪(第10條)	117
(特別刑事訴訟規定)	119
1. 參考人의 拘引·留置	119
2. 구속기간의 연장	120
3. 공소보류	121

第 3 章 防諜一般

第 1 節 防諜一般理論	123
1. 防諜의 概說	123
2. 防諜의 定義	124
3. 防諜의 目標	124
4. 防諜의 基本原則	125
5. 防諜의 手段	126

第 2 節 間 諜	129
1. 意義	129
2. 間諜의 區分	129
3. 間諜의 種類	130
4. 間諜網의 形態	131
5. 北韓의 間諜 南派方法	132
第 3 節 怠 業	133
1. 怠業의 定義	133
2. 怠業의 形態	134
3. 怠業의 目標	135
4. 怠業工作員의 類型	136
5. 怠業對策	136
第 4 節 顛 覆	137
1. 概念	137
2. 顛覆의 形態	137
3. 顛覆의 手段	138
4. 對 顛覆活動	139
第 5 節 北韓의 對南 戰略·戰術	141
1. 對南 戰略	141
2. 對南 戰術	148
第 6 節 防諜工作	158
1. 定義	158
2. 工作對象(目標)	158
3. 申告對象	160
4. 申告償金	166

第 4 章 保安狀況

第 1 節 對間諜 檢問檢索	167
1. 場所	167
2. 對象	168
3. 要領	169
4. 着眼點	169
第 2 節 保安狀況의 分析判斷	172
1. 保安狀況의 意義	172
2. 保安狀況 處理의 重要性	172
3. 保安狀況의 類型	173
4. 初動措置	174
5. 分析判斷	178
6. 報告	180

第 5 章 「드보크」發掘要領

第 1 節 「드보크」概念과 種類	181
1. 「드보크」의 概念	181
2. 「드보크」의 種類	182
第 2 節 場所選定要件 및 設置容疑地域	183
1. 「드보크」場所選定要件	183
2. 「드보크」設置容疑 地域	183
第 3 節 「드보크」設置·運用 方法	184
1. 埋設原則	184
2. 認識表示	185
3. 運用方法	185

第 4 節 「드보크」搜索·發掘要領	185
1. 容疑 對象地域 選定	185
2. 搜索·發掘 要領	186

第 6 章 安全業務

第 1 節 保安觀察法	187
I. 保安觀察處分의 要件	187
1. 意義	187
2. 目的	187
3. 保安觀察의 法的根據	187
4. 保安觀察 處分對象者	188
5. 保安觀察處分	190
II. 保安觀察處分의 決定節次	196
1. 對象者의 申告	196
2. 保安觀察處分 事案의 調査	198
3. 保安觀察處分 事案의 送致	199
4. 保安觀察處分의 請求	200
5. 保安觀察處分의 決定	201
6. 保安觀察處分의 期間更新	202
III. 保安觀察處分의 執行	204
1. 執行概要	204
2. 保安觀察處分의 執行中止	204
IV. 保安觀察의 實施	205
1. 觀察	205
2. 指導	205
3. 警告	206
4. 動態報告	207
5. 被保安觀察者의 申告義務	207
V. 保安觀察處分의 免除決定	208
1. 概要	208

2. 保安觀察處分の 免除申請	209
3. 保安觀察處分 免除決定 請求	209
4. 免除決定의 效果	210
5. 免除決定 取消	210
VI. 其他	210
1.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保護	210
2. 行政訴訟	211
3. 罰則	211
第 2 節 北韓不穩宣傳物과 不穩油印物	212
1. 北韓不穩宣傳物	212
2. 不穩油印物	213
3. 不穩油印物 制作, 所持 等に 對한 適用 法規	214
4. 不穩油印物 發生報告 및 連行報告 要領	215
第 3 節 理念啓導 活動	216
1. 目的	216
2. 理念啓導 活動	216
3. 理念啓導要員 教育	216
第 7 章 共產主義	
第 1 節 世界共產主義 變遷史	218
第 2 節 共產主義의 哲學理論	220
1. 헤겔의 辨證法	220
2. 唯物論	221
3. 唯物史觀	222
第 3 節 共產主義 經濟理論	224
1. 勞動價值說	224
2. 剩餘價值說	224
3. 資本主義 崩壞說	225

第 4 節 共產主義 政治理論	226
1. 暴力革命論	226
2.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226
第 5 節 國內 左傾勢力의 實態	227
1. 左翼事犯의 概念 및 特性	227
2. 國內 左翼勢力의 變遷	230
3. 國內左翼勢力의 分派 및 基本戰略	236

第 8 章 北韓離脫住民 對策

第 1 節 難民에 대한 國際法的 考察	244
1. 難民의 概念	244
2. 난민의 요건	245
3. 난민의 보호	247
4.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사례	247
第 2 節 北韓離脫住民	251
1. 國內 北韓離脫 住民의 現況	251
2. 脫北原因	252
3. 脫北者의 國際法的 地位	254
4. 關聯國家의 權利와 義務	254
5. 韓國의 權利와 義務	256
6. 북한의 책임	260

第 9 章 南北交流協力

第 1 節 南北交流協力 關聯法令	261
1. 남북교류협력의 법적근거	261
2. 법령제정 의의	261
3. 다른 법과의 관계	262

第 2 節 交流協力 節次 263

1. 住民往來 263

2. 住民接觸 264

3. 交易 264

4. 協力事業 265

5. 節次違反時 措置 265

第 1 編

情 報

第1章 情報理論

第1節 情報·諜報의 概念 및 重要性

I. 情報

1. 情報의 概念

‘정보라는 용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¹⁾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으나 기관의 수준, 취급하는 범위 등에 의해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즉, 의사결정의 기본지식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국내·외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國內

- (1) 정보는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한 결과로서 얻어진 지식이다.
- (2) 정보는 첩보를 수집, 평가, 해석한 결과로서 얻은 완전한 지식이다.

나. 外國

- (1)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서만 켄트).
- (2) 정보는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조직체이며 또한 조직에 의하여 지식을 얻게되는 활동과정이다(웹스터 사전).
- (3) 정보는 어떤 일련의 행위를 시작함에 앞서 알아야할 모든 지식이다(미 후버 위원회).
- (4) 정보는 어떤 자료를 평가, 해석한 후 현행 국가정책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된 첩보로부터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이다(와싱턴 플랫폼).

1) 허경미, 경찰정보론(경찰대학, 2001) p. 9

- (5) 정보는 인간과 조직체가 목적 지향적인 행동선택을 하는데 소용되는 일체의 알림이다(일본 정보활용법).

이와 같이 정보라는 개념은 각 기관 또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본지식, 즉,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란 행동에 앞선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전지식인데, 이는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얻어진 완전한 지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지식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뜻은 아니고 정책수립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수지식이다.

2. 情報의 特性

정보의 특성도 학자에 따라 또는 정보를 보는 입장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학문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學問的 特性

(1) 합목적성

정보란 국가목적의 정책자료로서 국가의도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지식으로 합법정보는 합목적성이 지배한다.

(2) 전문성

첩보 및 정보의 생산은 어떠한 원리에 의한 공식적 수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며, 정보활동이라고 하는 특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3) 제약성(존재구속성)

정보는 현재·과거의 事象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가설된 事象을 근간으로 생산되어 예외적인 존재 즉 변수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 문제의 보완적 수정이 수반되는 변화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事象에 따른 제약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한다.

나. 一般的 特性

(1) 가치성(정보의 3대 요건)

(가) 정확성

정보는 정확성이 그 생명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의사결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게 되어 오히려 그것이 없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적시성

정보의 가치상으로 보아 적시성은 절대적 요건의 하나이다. 아무리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정보라 할지라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없다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적시성은 무조건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알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완전성

여기서의 완전성은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요하고 정확한 내용이라도 부분적, 단편적인 정보는 사용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첩보로서의 가치밖에 없다할 것이다.

(2) 변화성

(가) 사용자와 정보가치의 변화

정보의 가치는 사용자의 등 문제에 관한 인지정도, 가치관, 태도 등에 따라 가치가 인정되는 선별적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나) 시간과 정보가치의 변화

정보가 작성되었을 그 시점에서는 비교적 정확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보의 가치는 점차 변화해 간다. 따라서 정보 작성자는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추적하여 추가 보완해 가야만 정보의 가치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활동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다양성

정보는 각 분야의 학문을 종합적으로 적용시키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보라는 지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가지 접근방법이나 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고 또는 지식만을 가지고는 다른 분야에서 보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4) 필요성

정보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식이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5) 특수 처리된 지식

정보는 일정한 주제에 관계되는 첩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사용자에게 쓸모있는 지식으로 산출되는 지식이다. 따라서 정보는 여러 사람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협동작업을 통하여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외에도 '자원으로서의 특성, 경제적 상품으로서의 특성, 종합적 측면에서의 특성(적실성, 적시성, 비이전성, 누적효과성, 신용가치성, 무한가치성, 완벽성 등)을 정보의 특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II. 諜報

1. 諜報의 概念

첩보란 평가 해석되지 않은 정보의 자료가 되는 1차적 지식을 말한다.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기관을 제외한 일반에서는 정보나 첩보를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으나 정보기관에서는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첩보라 하고, 그 자료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을 정보라 한다. 따라서 첩보란 정보가 되기 전의 모든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확하고 단편적이며 불규칙한 사실에 대한 견문으로 1차 정보 또는 생 정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諜報의 特性

가. 단순한 자료와는 달리 특정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한 목적의식에 따라 수집된다.

2) 허경미, 경찰정보론(경찰대학, 2001) p. 16~18

나. 미확인된 자료라도 수집가치가 있다고 보며 각종 소문이나 유언비어 등도 이에 해당되고,

다. 이와 같은 자료가 반드시 믿고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정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할 것이다.

III. 資料, 諜報, 情報의 比較

구 분	광 의 의 정 보		
	자료(Data)	첩보(Information)	정보(Intelligence)
의 미	단순사실, 상태, 신호	목적의식에 따라 수집된 자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유용한 정보
용 어	자료(데이터)	첩보, 1차정보	정보, 2차정보
활 동	입력(Input)	수집	평가, 분석, 가공
활동특성	임의적	의식적	의식적
활동주체	전체 구성원	전체 구성원	정보전담부서
특 성	무의미	불확실성	확실성
유 용 성	小	中	大
시 간	자동적	신속성	지연성

IV. 情報의 重要性

정보는 개인, 단체, 기업, 국가 등 누구에게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자료이다'.³⁾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생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이병곤, 정보개론(경찰청, 1994) p. 12

第2節 情報의 分類

정보는 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류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경찰실무전서에서는 정보의 성질, 출처, 사용주체, 입수형태, 요소, 대상, 기능 및 경찰업무별로 이를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I. 性質에 따른 分類

1. 戰略情報

전략정보란 국가정책 지도자들이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 취약성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전략정보는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수준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평상시에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며 전시에는 군사작전 계획의 기초로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타국의 능력」이란 특정국의 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군사·수송·통신·과학·기술·지리·인물 등의 제 요소를 포함한 총체적인 세력으로서 현재의 상태와 잠재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취약성」이란 외부로부터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무너지고, 보완이 잘 안 되는 분야로 국가의 목표달성에 막대한 차질을 줄만한 문제점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가능한 행동방책」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취하게 될 가장 유효하고, 적합하며, 용이한 방책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심리, 군사 등의 방책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 戰術情報

전략정보가 국가의 기본적 종합정보라는 개념이라고 볼 때 전술정보는 전략정보의 기본적인 방침 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차이는 전략정보가 국가의 기본적 종합정보인데 비하여 전술정보는 세부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점에 있다.

3. 防諜情報

방첩정보는 적 또는 적대집단의 정보공작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보로 소극적 방어적 의미의 정보를 말한다.

II. 使用主體에 따른 分類

1. 內部情報

내부정보는 독립기관 자체에서 발생 또는 생산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가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기업체, 사회단체 등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첩보를 입수하여 정보를 생산, 전달하고 있다. 이때 독립된 개체 내부에서 발생 또는 생산된 정보는 모두 내부정보이다.

2. 外部情報

외부정보는 다른 개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생되거나 생산되어 전달되는 정보를 말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도 필요로 하게 된다.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생산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외부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Ⅲ. 入手形態에 따른 分類

1. 直接情報

직접 정보는 정보입수에 있어서 어떠한 매체도 통하지 않고 직접 입수하는 형태로서 정보의 입수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어떤 사물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얻은 정보를 말한다.

2. 間接情報

간접정보는 중간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를 말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직접정보 보다는 언론매체나 도서 등을 통하여 얻는 간접정보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Ⅳ. 要素에 따른 分類

1. 政治情報

정치정보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고 복잡 다양하다. 이는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한 제반 제도나 이념, 정책의 시행과 오류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선거제도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정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가. 국가권력 구조와 세력의 소재
- 나. 국가권력 구조를 위한 법률, 제도, 이념
- 다. 국가적 주요정책 결정기구
- 라. 정당, 의회기구와 활동
- 마. 제 정치조직 및 활동

바. 지방자치의회, 단체의 활동

사. 국민의 정치의식과 태도

아. 국가정책과 국제관계

자. 압력단체의 실태 및 활동상황

차. 대외정책 등에 관한 정보

2. 經濟情報

경제정보란 “개인 또는 조직체가 재화를 얻어 욕망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과 취약성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관한 지식은 한 국가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기여하며, 외국과의 경제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제시한다.

경제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나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인력자원과 자연자원, 산업생산력, 수송 및 통신시설,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 대외경제관계, 금융정책, 경제성장 추세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전에 대비한 각국의 경제정책, 국제적 경제기구나 금융기구의 정책 및 동향, 무역대국의 경제정책의 흐름, 주요 선진국의 對韓 경제정책 등이 있다.

3. 社會情報

사회정보란 “사회적 제 요소에서의 현상에 관한 개인 또는 조직체 등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인 능력과 취약성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사회정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대부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 정보에 흡수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분석하면 인종, 인구, 주민, 지역, 문화의식 및 성향, 보건, 교육, 종교, 언론, 사회보장문제, 사회집단·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분석 등과 사회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 각계 각층의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4. 軍事情報

군사정보의 주요내용은 군사역량에 관계되는 제 요소로서 규모, 편제, 확장능력, 실용성, 영도력, 전투, 전술, 전통, 군대의 사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그리고 방첩정보로 대별할 수 있다.

5. 科學情報

과학정보란 “한 국가의 과학적 제 요소에 관한 정보로서 과학적 능력과 취약성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과학정보는 경제 및 산업정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과학관련 제 국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과학역량의 정도, 각종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관의 업적, 타국과의 비교, 첨단과학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6. 産業情報

산업생산 구조, 능력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첨단 기술경쟁의 심화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호목적의 정보 등으로 산업정보의 주요대상으로는 기술집약성 산업, 수출산업시설, 첨단과학기술업체정보, 기간산업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과학 및 경제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V. 對象에 따른 分類

1. 消極情報(保安情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점의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위한 정보이다. 즉,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과 같이 국가작용 중 소극작용에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2. 積極情報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제 정보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및 복지행정 등 국가작용 중 적극작용에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VI. 機能에 따른 分類

1. 基本情報

모든 事象의 靜的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를 말한다. 즉, 인종이라든지 지리적 일반상태, 국가의 전통, 가치관, 권력구조, 국가의 기본정책 등과 같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정태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 중에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태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영구불변인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정보로 취급될 내용은 사실상 모든 변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제 변화의 기초인 기본정보는 본래적인 정보사용자가 사용할 정보라기보다는 현용정보 또는 판단정보의 작성자가 사용할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정보수집록에 보관하였다가 정보백과사전화 할 수 있는 정보이다.

2. 現用情報

모든 事象의 動態를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정보로서 시사정보, 또는 현행정보, 현상정보라고 칭하기도 한다. 현용정보는 일정시점에서 발간되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자에게 그때그때 동향을 알리기 위한 정보이며 수시정보, 시사정보, 정기정보가 있다.

현용정보는 현재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기본정보가 정태적 성격에 관한 정보

인데 비해 모든 대상의 동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현상보고적 정보이다. 이 때문에 현용정보는 정책담당자, 의사결정자에게 현시점에서 그때 그때의 동향을 알리기 위한 정보이다.

3. 判斷情報

기본정보는 비교적 정태적 현상에 관한 기초자료이고, 현용정보는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라면, 판단정보는 특정문제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하거나 평가한 정보를 일컫는다. 판단정보는 확정된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기본정보와 현용정보를 기초로 해서 추측, 판단한 정보로서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서 기획정보라고도 한다.

VII. 警察業務에 따른 分類

1. 一般情報

국가의 안전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포괄적인 정보활동에서 입수되는 정보로서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이다. 일반정보에는 정치·경제·사회·노동·교육·문화·종교·교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犯罪情報

경찰의 기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정보 수집은 경찰정보활동의 가장 우선적 항목일 수밖에 없다. 범죄정보의 중요성과 독자성이 부각되면서 경찰은 1991년 수사첩보활동 규칙을 제정 경찰수사기능에서 범죄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기획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3. 保安情報

공산주의의 이념에 동조하고 국익을 해하는 세력에 대한 활동상황이나 단체·개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위해 제거, 국내에서의 간첩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말한다.

4. 外事情報

자국인 또는 내국인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로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국내 제반정세에 미치는 영향력 및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VIII. 其他

1. 內容에 따라 國內情報 國外情報

2. 使用水準에 따라 國家情報 國家部門情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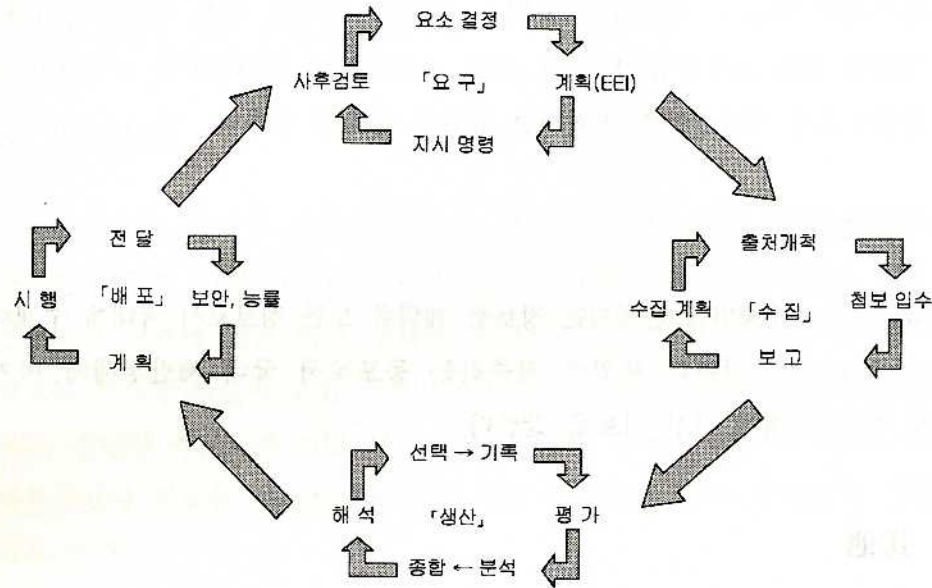
第3節 情報의 循環

I. 情報循環의 意義

정보의 순환이란 정보산출의 일반적인 과정을 말한다. 즉, 정보활동은 ① 정보의 요구, ② 첩보의 수집, ③ 정보의 생산, ④ 정보의 배포 등 4단계가 부단히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보활동의 연속적 과정을 정보의 순환이라고 한다.

정보순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단계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새로운 첩보가 수집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입수된 정보는 처리되고 분석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처리된 정보가 전파되고 수요자들에 의해 사용되며 다른

한 편에선 새로운 정보수요가 나타난다.



II. 情報의 要求段階

1. 概念

정보의 요구란 정보의 사용자가 필요성의 결정에 따라 첩보의 수집활동을 집중 지시하는 단계로 정보순환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하며 이것은 정보활동의 기초가 된다. 즉, 정보의 요구는 정보 순환의 첫 단계로서 필요성의 결정과 이 결정 내용을 지시하는 단계이다.

2. 要求過程

가. 첩보수집의 기본요소 결정

요구내용을 한정하고 구체적 요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어느 부문의 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요소를 결정한다.

나. 수집계획서의 작성

누가(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첩보를 수집하여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보고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시해야 수집기관에서 요구내용에 따른 첩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보작성자가 의도하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계되는 첩보를 입수해야된다. 따라서 첩보수집계획서란 정보작성자가 첩보의 조직적인 수집을 위하여 작성한 논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는 배경첩보제시, 세부요청, 수집기관, 우선 순위, 보고기간, 식별기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명령 및 하달

수집계획서가 완성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집기관에 지시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수집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적 고려와 최대한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보안 대책이 뒤 따라야한다.

라. 사후검토(수집에 대한 감독)

명령 하달된 사항이 수집기관에 의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시된 내용 중 수정하거나 보충·보완하여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要求方法

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 정부의 연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전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우선 순위는 통상적으로 이 PNIO에 귀결된다. 따라서 이는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된다.

나. 첩보기본요소(EEI :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전체적 지역에 걸쳐서 수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요구방법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 예측이 가능하여 사전 수집계획서가 요구되며 통상 수집계획서라면 EEI를 의미한다.

다. 특별정보요구(SRI :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어떤 수사적 돌발사안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사전 수집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며, 요구자의 즉흥적인 요구방법으로, 보통 경찰업무에서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주로 SRI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 기타 정보요구(OIR :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정책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PNIO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구 방법을 말한다.

Ⅲ. 諜報의 蒐集段階

1. 概念

가. 첩보의 수집이란 첩보수집기관이 첩보의 출처를 개척하여 요구되는 첩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작성 기관이나 분석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첩보의 수집활동은 정보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훌륭한 정보는 훌륭한 첩보를 토대로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첩보는 산재하여 있어 잘 보이지 않고 또한 타인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2. 蒐集計劃⁴⁾

수집계획은 특별한 정형을 갖추어 어떤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으나 통상 다음 7 가지 항목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4) 경찰청 발행 정보외근 과정

※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 ① 수집대상, 목표
- ② 수집 시 분담, 책임
- ③ 관련 세부일정 계획
- ④ 수집방법
- ⑤ 수집성과, 보고요령
- ⑥ 수집시 유의사항
- ⑦ 기타 특별유의사항

3. 出處開拓

가. 출처의 의의

첩보의 출처란 첩보가 제공되는 원천을 말 한다.

나. 출처의 종류

(1) 근본출처, 부차출처

근본출처라 함은 첩보가 획득되는 실제적인 근원 그 자체를 의미하며 중간기관의 변경없이 원형 그대로의 첩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말하고, 부차출처란 근본적인 출처에 의하여 입수된 첩보가 중간기관(전달자)에 의해 평가, 해석, 요약됨으로써 변형되어 제공되는 출처를 말한다.

(2) 공개출처, 비공개출처

공개출처란 첩보의 존재상태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출처로 신문·잡지·논문·서적 등을 말하며, 이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 첩보 획득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그렇다고 공개출처에 의해서 획득되는 첩보의 가치가 반드시 비공개출처에 의해서 획득되는 첩보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출처란 출처가 保安的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출처를 말하며 비밀성, 기술성 등의 특성이 있다.

(3) 정기출처, 우연출처

정기출처란 일정기간에 첩보가 제공되거나 반복하여 제공되는 출처(정기간행물, 신문, 뉴스, 주간지, 월간지 등)를 말하며, 우연출처란 어떤 우연한 경우에 첩보가 획득되는 출처를 말한다.

4. 蒐集方法

가. 공개적 수집방법

공개출처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일상적인 정보활동을 통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위험부담이 적다.

(1)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온라인 통신망이다. 인터넷은 신속한 정보와 통계자료, 학술논문, 프로그램 및 자료파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 TV·라디오 활용

전파를 이용한 매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이다. TV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생활문화 정보, 상식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속극이나 각종 오락게임, 첩보영화 등을 통해서도 활용하기에 따라 신선한 첩보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라디오는 TV와 달리 특별한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전문 방송을 통해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각종의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다.

(3) 신문활용

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기록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지는 특정분야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준다.

(4) 각종 인쇄물의 활용

그 외에 각종의 정기간행물, 전문지 및 광고물 등을 활용하면 의외의 첩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5) 기타

(가) 진정서나 투서 등의 분석

진정서나 투서 등은 국가정책에 대한 것, 공무원에 대한 것, 개인에 대한 것 등 다양한데 이를 잘 분석하면 국가 시책의 잘못된 점, 사회비리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나) 민원성 시위의 이슈분석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세대간, 계층간,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커짐으로서 민원성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나 요구사항 등을 잘 분석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여론,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증권가의 품문분석

증권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전반에 걸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라) 시민 사회단체 등의 주장입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권, 복지, 환경, 선거,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을 파악하고 분석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비공개적 수집방법

비공개적 수집이란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첩보를 입수할 수 있으나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고 위험이 뒤따른다.

5. 諜報蒐集 要領(技法)

가. 접촉

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사람을 접촉하고 상호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부드러운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나. 관찰

관찰이란 특정한 목적 하에 인간의 실체, 사물의 현상, 사건의 전말을 오관을 통해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며 첩보수집활동의 기본이 된다.

(모든 정보의 90%는 오관의 작용에 의해 수집됨.)

다. 면담

첩보 수집을 위해 인간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항상 주변에 여러 분야 별로 휴먼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고 이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메모

메모는 정리된 기록이 아니고 단편적인 기록으로 기억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상대방이 감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첩보로 작성한다.

◎ 메모 수칙

1. 메모는 질보다 양을 중시한다.
2. 가능한 간결하게 기록한다.
3. 고유명사나 숫자는 정확히 기록한다.
4. 수첩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종장비를 활용한다.

6. 諜報報告(傳達)

첩보를 수집했으면 첩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신속히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첩보를 입수하였어도 이것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전달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분 아니라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될 때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가. 보고서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 (1) 가치가 변질되기 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 (2)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고가 되어야 하고
- (3)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보고요령은 구두보고와 서면보고가 있다

(1) 구두보고는

주로 시간이 촉박하여 보고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내용이 은밀·중요하여 보고받는 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며 보고요령은 우선 알기 쉽고 간단명료해야 하며 경중과 완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서면보고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용량이 많을 때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데, 보고요령은 간단, 명확, 정확의 3원칙이 요구된다.

다. 전달·배포수단은

첩보의 중요성과 긴급성 및 형태에 따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구두, 전신, 전화, 도표, 사진, 문서 등이 있다.

IV. 情報의 生産段階

1. 概念

정보의 생산이란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로 산출하는 정보순환의 단계로서 수집된 첩보가 정보생산기관에 전달되면 생산기관에서는 첩보의 선택, 기록 및 보관, 첩보의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의 과정을 거쳐 정보(보고서)를 생산하게 된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첩보의 분석관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명석한 사고와 추리,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생산과정은 정보생산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정보생산 단계는 일정한 소순환 과정을 거치지만 무수한 첩보와 자료를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지는 않으며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평가, 분석, 종합, 해석, 판단 등의 작업을 합쳐서 분석업무라 하고 있다.

2. 生産過程

가. 선택

입수된 각종의 첩보 중에서 유용성과 적절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려내는 첩보처리의 기능으로 초기의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록·보관

선택된 첩보를 유형에 따라 체계 있고 순서 있게 요소별로 분류하고, 사건별로 기록·보관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자료가 모두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첩보이거나 사용한 첩보는 기록하여 관리한다.

다. 평가

첩보의 평가란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첩보에 대한 평가는 첩보가 수집될 때부터 시작하여 전 과정에 걸쳐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보의 생산과정에서의 평가는 보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요소

- . 첩보의 적합성
- . 출처의 신뢰성
- . 첩보의 정확성

라. 분석

첩보의 분석이란 평가된 첩보를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요소들의 인과관계, 패턴이나 경향, 상관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예측과 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순환상의 분석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진다.

마. 종합

부여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사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분석에서 확인된 하나 하나의 단편적인 자료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맞추어 하나의 통일체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분석과 종합은 미리 평가된 첩보를 언제나 해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정보처리의 핵심으로서 항상 분리된 작업과정이 아니라 흔히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바. 해석

평가, 분석, 종합된 새 정보에 대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건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타당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의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특히 주관의 개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사. 결론의 도출

결론이란 해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가정을 확정하고 최초로 부여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이다. 도출된 정보는 증거가 가능해야 하며 간단하고 인상깊게 표현한다. 따라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결론도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V. 情報의 配布段階

1. 概念

정보의 배포란 생산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공인된 사람과 기관 즉, 정보 사용자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보순환의 최종적 단계이다.

2. 配布의 原則

생산된 정보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포 부서를 결정하고 능률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절차와 형태 및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적시성

정보는 사용의 시기에 맞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 작성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완전하며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적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나. 보안성

홀름하게 작성된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보 보안의 3원칙

- 1)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 2) 적당성의 원칙
- 3) 보안과 능률의 조화

다. 적당성

정보는 적당량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여야 한다는 원칙

라. 필요성

필요성의 원칙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마. 계속성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보가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통보해 주어야 한다.

3. 配布手段

가. 배포방법

(1) 비공식방법(직접 전달)

상담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2) 브리핑

강연식으로 진행 다수의 대상에게 일시에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이용된다.

(3) 메모

비교적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4) 전화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5) 일일정보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쳐 발생한 상황을 망라하여 작성한 보고서

(6) 기타

정기간행물, 특별보고서, 서적, 도표, 사진, 전신 등

나. 배포수단의 결정요소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중대성과 긴급성, 비밀의 정도, 수령할 기관과 그 위치, 이용 가능한 전달 방법, 정보사용의 목적, 요구되는 부문의 수 등

第4節 情報警察

I. 情報警察의 意義

1. 實質的 意味의 情報 警察

제도적인 부서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 요소를 예방 수사하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形式的 意味의 情報 警察

법·제도적 의미의 정보경찰을 말하며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정보과 등 각급 경찰관서의 정보전담 부서의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II. 情報警察의 任務

1. 見聞蒐集 및 處理

경찰관은 일상생활 중에 국내외의 견문을 수집, 분석, 평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危害 要素의 事前除去

정보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유해로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신속히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3. 施策資料 提供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판단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III. 情報警察의 特性

1. 目的

일반경찰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나 정보

경찰은 국가의 안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2. 活動

일반경찰은 순찰 등 예방활동과 아울러 범죄수사, 시위진압과 같이 사후 교정적 활동도 가능하나, 정보경찰은 반드시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예방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手段

일반경찰의 활동수단은 대체로 공개적, 명령 강제적이나 정보경찰 활동은 비공개적(업무, 신분) 활동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동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임의적 수단이다.

4. 保護法益

일반경찰은 대체로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나 정보경찰은 대체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국가의 안전이라고 하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IV. 情報警察官의 資質

1. 基本資質⁵⁾

가. 대인관계 능력

정보활동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정보요원은 평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관계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5) 경찰실무전서(경찰실무전서편찬위원회, 2000) p. 1081

나. 주의력

미세한 일에도 철저한 주의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회현상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주의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다. 식별력

정보수집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실과 오류를 범하는 예가 많으므로 입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식별하고 중요도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 탐구심

어떤 징후를 포착하면 중도에 그침이 없이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집념을 가져야 한다.

마.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력

정보수집이라는 과정의 맨 처음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정보를 작성할 때까지 순서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 없이는 중복, 누락, 과잉 혹은 부족 등을 피할 수 없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실발견이 어렵게 된다.

바. 다양한 재능

정보 수집자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재능을 갖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사. 정보적 감각

정보적 감각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이다. 정보요원은 남들이 평범하게 보는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 발굴해 내고, 이것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관해 표면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 이면을 깊숙히 보고 진실을 발견하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2.姿勢

가. 보안유지 능력

정보경찰은 정보활동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떠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는가, 어떠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어떠한 정보가 생산되었는가 하는 정보활동의 모든 분야에 관해 보안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 또는 남용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나. 목적의식⁶⁾

수집된 정보가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수집계획이나 지침을 숙지하고 무엇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수집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다. 타인의 견해 존중

정보요원은 항상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라. 명예나 돈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탐내지 말 것

정보요원은 개인의 명예나 돈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묵묵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행동성

“정보는 발로 써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건현장, 즉, 반드시 정보가 발생되는 현장에 나가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 현장감 있고 사실성과 진실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바. 사명감

정보요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이 그날 그날의 임무를 수행해

6) 경찰실무전서(경찰실무전서편찬위원회, 2000) p. 1082

나가야 한다.

V. 情報警察의 組織

1. 警察廳

정보국을 두고 치안감인 정보국장 밑에 경무관인 정보심의관이 있고 그 아래 정보1, 2, 3, 4과를 두고 있다.

2. 地方警察廳

서울은 정보관리부를 두고 경무관인 정보관리부장 밑에 정보1, 2과를 두고 있다.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는 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있다.

3. 警察署

경찰서에는 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따라 정보·보안이 분과된 경찰서, 정보·보안이 통합된 경찰서, 정보·보안·경비가 통합된 경찰서가 있다.

정보·보안이 분과된 경찰서에는 정보1계와 2계를 두고 있고, 정보·보안이 통합된 경찰서에는 정보계와 보안계를 두고 있으며, 정보·보안 경비가 통합된 경찰서에는 정보계, 보안계, 경비계를 두고 있다.

VI. 北韓 및 外國의 情報機關

1. 北韓의 情報機關

가.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형사재판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전담

기구로서 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감시·구금·체포·처형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법적 절차 없이 반 당·반체제음모자, 간첩용의자를 구속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중앙으로부터 각 도·시·군의 행정단위와 최말단 조직인 리 단위까지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군대 내부에도 중대단위까지 '정치지도부지도원'을 파견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김정일 호위행위, 정치사상범심문,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에 대한 감시, 북송교포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밀문서관리, 북한 내에 침투된 외국간첩의 색출검거, 북한 내의 반체제주의자 및 외국간첩 색출활동을 위한 공작원의 양성, 장병들의 동태감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사회안전부

사회안전부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1945년부터 당시 내무성 산하의 1개국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1972년 사회안전부로 승격하였다. 사회안전부는 원칙적으로 북한 내 사회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비밀경찰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美國

미국의 정보기관은 40여 개가 넘지만 국가안보를 목표로 활동하는 정보기관 들은 국가정보기관, 국방성정보기관, 군정보기관, 통합군 및 특수군사령부정보 기관, 성정보기관 등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기구들 중에서 정부전체를 위해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이다.

여기에 법무성 산하의 연방수사국은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 이지만 국내 공안정보 수집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3. 英國

영국 정보기관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는 세 기관(「SIS : 구 M16」, 「SS : 구 M15」, 「국방정보 참모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각각 내무성, 외무성, 국방성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장은 수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외에 런던 경찰청의 특별국, 정부 통신본부, 합동항공정찰정보센터 등이 있다.

4. 日本

재의 일본 정보기관은 내각정보조사실 외에 총리부 산하의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의 외청인 공안조사청, 그리고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이 있다.

5. 中國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보기관 자체가 은밀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조직, 체계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밝혀진 것으로서는 국제연락부, 통일전선사업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총참모부 산하의 구사정보부와 기술부, 공안부, 신화사 등을 들 수 있다.

第5節 見聞蒐集 및 報告

1. 見聞蒐集의 意義

견문수집이란 경찰관이 공·사 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과학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은 국가안전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견문,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견문 등에 관해 신속, 정확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關聯規定

1. 警察법 第3條(警察의 任務)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2. 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職務의 範圍)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나. 경비·요인경호 및 대 간첩작전 수행
- 다.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라.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마.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3. 수사첩보활동규칙(경찰청 예규 제167호)

4. 견문수집및처리규칙(경찰청 예규 제330호) 등이 있다.

III. 見聞蒐集의 對象

1. 情報警察의 견문수집 對象

- 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 나. 시중 유언비어, 집단민원·사회불안 요인
- 다. 노사분규의 원인 및 노사협조 저해 요인
- 라. 정부 주요시책의 시행 과정상 문제점 또는 국민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소
- 마. 국가정책 발표 시 각계 반응 및 정책 제언
- 바. 경찰업무 관련 여론 및 개선사항
- 사. 범죄 및 비리에 관한 사항
- 아. 각종 법령,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2. 外勤警察官勤務規則 第51條(경찰청훈령 제288호)에 規定되어있는 事項

- 가. 각종 범죄와 방법에 관한 사항
- 나. 다중범죄와 관련된 사항
- 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공산계열에 관한 사항
- 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문제에 관한 사항
- 마. 공안, 풍속, 영업, 기타 민심동향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IV. 見聞 蒐集 者의 姿勢

1. 蒐集目標 및 問題意識을 明確히 가지고 있을 것

무엇에 관한 것을 수집할 것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을 보고 들어도 잡히는 것이 없다. 또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중요한 사실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수가 있다.

2. 背景이나 裏面을 把握하려는 努力을 할 것

첩보를 수집할 때는 표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배경이나 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先入見을 버릴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見聞蒐集은 正確하고 詳細하게 하고 蒐集된 것은 管理할 것

견문 수집자는 사안을 세밀히 관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수집하고 보고가 끝날 때까지 기록, 촬영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5. 迅速히 報告할 것

수집된 견문은 신속히 보고하여 적시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속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상의 한시성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가치의 보전방법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상실되며 내용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추리와 비약을 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V. 用語 解説 및 蒐集 基準量

1. 用語

2. 蒐集 基準量

강의참고

VI. 見聞蒐集 報告에 대한 處遇

1. 特別昇進

가. 대상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나. 요건

- (1)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예방에 공적이 뚜렷한 자
- (2) 전국단위의 중요첩보 제출실적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발된 자

다. 시기

- (1) 비정기적 특진 표창은 즉시
- (2) 정기적 특진 표창은 내용에 따라 반기, 분기별 실시

2. 表彰

가. 경찰청에서는 정기적(반기, 분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 시·도 지방청별

로 정보업무 유공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특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정보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장 표창

나. 특별히 중요한 견문을 수집 보고할 시는 별도 포상한다.

다. 지방경찰청은 자체 표창계획에 의거 견문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또한 견문수집성적평가 결과는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VII. 蒐集된 見聞處理過程(지구대 基準)

관내의 경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견문



견문보고서 작성



부책(견문수집 처리대장)에 제목을 기재하여 지구대장 결재



인편·전자우편 등으로 정보과 전달



정보과 견문담당자 분석, 판단

- ┌ 통상 중보, 참고자료로 분류
- |
- └ 각 개인별 견문점수 기록
경무과 인사담당자에게 통보



중보이상 지방청 및 본청 보고

VIII. 見聞報告書 作成要領

1. 報告書의 要件

실체면과 형식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 실체면

이는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의 충실. 즉,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요소 및 국민의 피해나 불만을 증폭시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거나 국민의 결속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국가정책의 시행 관련 내용 등으로 정보생산 단계에서 평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생산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있는 내용으로 상세하고 정확하며 객관성과 완전성 등이 구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나. 형식면

이는 보고서의 각 항목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항목 구분은 단락별로 내용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전체내용을 보아 위의 항목과 연결되고 질서있게 구분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결하게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고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성하되, 특히 문법과 항목의 용어선택에 유의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 보고서의 構成形式

두서 - 제목 - 요지 - 내용(현황, 문제점, 대책) - 사례 - 종합대책 건의 順

2. 作成原則

가. 필요성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나. 완전성

형식적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 관련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작성하여 가급적 6하 원칙에 의한다.

다. 적시성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공급해야 한다.

라. 명확성

불명확하거나 추상적 개념을 피하고, 내용과 용어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

마. 간결성

가능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수식어나 미사여구 반복표현 등 불필요한 내용 배제한다.

바. 유효성

분석관이 보고서 검토 시 의문점이 없도록 한다.

사. 경제성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최대한 절감하여 양질의 첩보가 생산되도록 한다.

3. 作成要領

가. 보고서의 구성

현황, 문제점, 대책으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의 훌륭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형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수집된 첩보의 분량, 성질, 내용 등에 따라 그에 맞게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하고 문장의 맥이 이어지도록 순서있게 이어가면 될 것이다. 특히 상황보고, 동향보고 등은 본 요건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맞게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나. 전문보고서도 공문서이다

전문보고서도 공문서로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등 문법에 유의하여 훌륭한 보고서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 보고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 보고자는 관계법령 등을 이해하고 상황의 성

격에 관한 객관적,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라. 기타

반응은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제언은 핵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미사여구나 보고자의 주관적 판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報告書 作成 時 判斷 및 警察措置를 나타내는 用語⁷⁾

가.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1) 판단됨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2) 예상됨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3) 전망됨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의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한지라는 예측을 할 경우

(4) 추정됨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5) 우려됨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나. 경찰조치를 나타내는 용어

(1) 설득·반발의 최소화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그 파급영향이 심각한 경우 또는 경고해야

7) 경찰실무전서(경찰실무전서편찬위원회, 2000) p. 1112~1113

할 사안이지만 그 대상이 경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 단, 불법 행위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2) 경고

불법적인 상황이나 불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을 때

(3) 차단

불법폭력시위, 기습 등을 제지 시

(4) 연행

다중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현장에서 주동자, 극렬 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을 구분함이 없이 포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 조사 후 사법 처리할 목적으로 동행한 경우

(5) 격리조치

단순히 해산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다중을 동행한 경우

(6) 검거

폭력사용 등 비교적 뚜렷한 위법의 혐의가 있거나 이미 수배 중인 자 또는 검거대상으로 분류된 자를 검거한 경우(또는 검거 하고자 할 경우)

IX. 보고서의 종류

가. 見聞보고

나. 輿論·反應·提言보고

다. 特報

라. 親披

마. 判斷書

바. 對策書

사. 狀況보고(速報)

第2章 採證 및 情報記錄

第1節 採證

I. 採證의 意義 및 重要性

1. 採證의 意義

채증활동이란 채증요원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다중의 집회 및 시위현장을 촬영·녹화·녹음함으로써 정확한 상황의 파악과 사후 불법·폭력시위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구증자료를 확보하는 정보경찰의 증거수집 활동을 말한다.

2. 採證活動의 重要性

집회시위의 관리에 있어서 불법·폭력시위 주동자 등 범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현장검거는 시위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대규모 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현장 채증을 통해 사후에 엄정하게 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적정한 법 집행은 곧 채증활동의 성공여하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II. 關聯規定

1. 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직무의 범위)

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나. 경비, 요인경호 및 대 간첩작전 수행

다.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라.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마. 기타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

2. 刑事訴訟法 第216條 第3項(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3. 採證活動規則(경찰청 예규 제125호)

III. 採證要員의 姿勢

1. 確固한 使命感과 責任感을 가져야 한다.

2. 狀況 卽應的 姿勢(불법행위 순간포착을 위한 신경집중)를 堅持해야 한다.

3. 자극적인 行動을 自制해야 한다. 즉, 變數發生 要因을 提供해서는 안 된다.

4. 鎮壓部隊와 行動을 統一해야 한다.

5. 奪取 및 攻擊에 대한 身邊 防禦態勢를 確立해야 한다.

IV. 採證計劃 樹立

1. 採證班 編成

가. 채증반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편성 운용한다.

나. 지방경찰청에는 채증 제대를 편성하여 주요 집회 및 대규모 문제성 집회 시 경찰서 채증반을 지원하고, 경찰서 자체 채증반은 관할 구역내 집회등 치안위해 사태에 대한 채증을 실시한다.

- 다. 채증반은 動사진 촬영조, 靜사진 촬영조, 녹음조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라. 경찰서장은 관내의 채증 수요를 사전에 판단, 채증조 및 그 수를 적절하게 편성한다.
- 마. 채증요원은 채증기기의 조작능력이 있는 자, 무술 유단자인 정보·보안·수사 부서의 직원으로 차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한다.
- 바. 각 경찰서 채증촬영 요원은 채증교육을 이수한 자로 우선 편성한다.

2. 採證計劃 樹立 시 考慮事項

- 가. 상황의 특징·양상 등을 사전파악, 채증수단 및 방향을 결정한다.
- 나. 출동지점, 위치, 진로, 퇴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 다. 당일 상황에 따른 장비를 적절히 선정한다.
- 라. 충분한 보조장비를 준비한다.
- 마.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정확한 지시를 한다.

V. 採證의 실제

1. 遵法 集會·示威

- 가. 집회·시위의 상황, 행사 참석인원 및 장소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접 건물과 함께 촬영한다.
- 나. 행진 시 여경 및 질서유지인의 근무상황, 교통질서유지대 및 행진대열이

한 장면에 나오도록 촬영한다.

- 다. 건널목 통과시 여경질서유지선 설치모습 및 건널목을 통과하는 행진대열이 한 장면에 연출되도록 촬영한다.
- 라. 행진대열 선두에서 경찰서장이 대열을 지도하는 장면 및 관할 경계지점에서 집회·행진상황을 인계인수하는 장면 등은 자연스럽게 행진대열이 배경으로 나오도록 촬영한다.
- 마. 자체 질서유지인이 함께 질서유지 하는 장면(배경에는 행진대열이 포함되도록)을 촬영한다.

2. 違法한 集會·示威

- 가. 불법 폭력시위 발생시 종전대로 사진 매수에 구애받지 말고 관독이 가능하도록 얼굴 및 행위중심으로 촬영하되 최대한 근접촬영 한다.
- 나. 불법단체 참여여부(이적단체, 신고되지 않은 단체원) 채증 시 포괄적 정황(참석인원 깃발 등) 촬영 후 관독 가능하도록 인물·행위 증점으로 세분하여 촬영한다.
- 다. 집회·시위의 전경(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인근의 건물 포함) 촬영 후 단계적 진행상황을 촬영한다.
- 라. 위험한 물건(쇠파이프·화염병·각목·돌·탈취 경찰봉 등)의 소지 및 사용 장면을 촬영한다.
- 마. 폭행·납치·기물손괴 등 불법행위 장면을 촬영한다.
- 바. 인적·물적피해 및 공간적 피해상황(차도나 건물점거 및 파손 등)을 촬영한다.

사. 주최·주동·선동자, 선전 선동물품(플래카드·현수막·대자보 등), 사용된 차량(번호식별이 가능하도록), 주요 차량 및 기기 조작(운전)자 등을 촬영한다.

아.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순발언·구호 등의 녹취

자. 기타 자해행위 등 위법 및 특이사항 등을 촬영한다.

3. 採證要員의 活動要領 및 有意事項

가. 活動요령

- (1) 상경집회는 지방 관할경찰서에서 출발단계부터 용모·복장 등을 사전에 촬영하여 불법행위 판독 시 활용토록 한다.
- (2) 대형 문제성 상경집회 시 지방별 단체가 있는 경찰서에서 담당자 파견, 채증활동 시 지원한다.
- (3) 집회 전후 소속 단체별 전체장면 촬영하고 위법행위시 그룹별, 회사별, 학교별, 전체 또는 개인 소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 촬영한다.
- (4) 채증 시 집회 참석단체의 소속깃발, 옷의 색상 등 특징물 포함 촬영

나. 유의사항(피납 및 장비의 피탈 대비 철저)

- (1) 신분증·수갑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장비 및 물품소지를 일체 금지한다.
- (2) 주최측의 기습 질문 시 대응할 수 있는 예상답변을 준비한다.
- (3) 보호장구 착용 기자단과 가급적 행동을 통일(주변 기자들과 구별되는 복장 착용 금지)한다.
- (4) 채증 현장에 대한 주변 지형지물을 사전에 답사하여 채증 지점 선정 및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퇴로를 확보한다.
- (5) 행진 중 돌발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민첩한 행동으로 채증
- (6) 피습 및 장비 피탈에 대비하여 원거리 채증을 원칙으로 하고 근접 촬영 시 신변보호조의 보호 하에 촬영하고 촬영즉시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7) 집회 시마다 참석하여 시비하는 자에 대해 채증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8) 사진기·비디오·녹음기 등 채증 장비는 가급적 노출을 금지한다.

4. 採證資料의 管理와 運用

가. 채증 사진첩·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 등의 채증자료는 정보기록실에서, 경찰서는 정보1계에서 관리한다.

나. 타 부서에서 수사상 채증자료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 접수 후 열람 시킨다.

VI. 採證 寫眞帖 製作

1. 撮影要員은

採證 終了 後 採證時에 作成한 記錄紙(촬영시간·대상물의 개황 등의 기재)를 參照하여 採證寫眞 說明書를 제출한다.

채 증 기 록 지

채 증 자	소 속	계 급	성 명
필림컷수			
일 시			
장 소			
설 명			

※ 채증은 실명제로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

사 진 설 명 서

사 진 부 착						
사진 촬영						
채 증 자	소 속	00경찰서	계 급		성 명	

2. 寫眞帖에는

다음 事項을 記錄한다.

사태의 개황	
시간별 진행상황	
주관단체 또는 주최자	
검거 및 피해상황	

3. 寫眞帖은

最短時間내에 迅速히 報告하되 영상입력상 완전봉합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삽입한다.

4. 主要 集會·示威時 採證寫眞帖 製作要領

가. 상황개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황 전개 순으로 제작한다.

나. 개괄적 상황장면

전체적인 상황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별로 사진첩 앞부분에 부착한다(전체량의 10~15% 정도).

다. 불법 폭력시위 장면

행위·인물 위주로 채증하여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부착하여 작성한다(전체량의 85~90% 정도).

VII. 採證資料의 判讀

1. 各 警察署別 合同 判讀組 編成 運營

가. 채증 관할경찰서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진압 참여자, 기타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 판독한다.

나. 정보, 보안, 수사 기능간 합동 판독조를 편성 운영한다.

다. 정보과장이 직접 장악하여 매일 실적을 점검 독려하고 판독된 인적자료는 신속한 영상입력을 통하여 검거활동을 지원한다.

2. 採證 영상판독시스템 적극 활용

가. 보고된 채증자료는 즉시 영상입력 조치 후 판독자료를 출력한다.

나. 판독자료는 사법처리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이첩하고 수사자료철을 비치한다.

다. 채증 주관부서는 집단사태 발생, 채증활동, 판독실적, 검거사항 등에 대한 분기별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서면 보고한다.

第2節 情報記錄

I. 概念

1. 情報記錄의 意義

정보기록이란 경찰의 정보활동 결과 얻은 제반 자료를 경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정보기록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記錄管理의 目的

정보기록관리는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關聯規定

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2.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국가정보원규칙)

3.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 훈령)

5.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경찰청 훈령)

III. 記錄의 管理

1. 記錄管理의 前提條件

가. 많은 자료를 무조건 관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보관할 자료는 가능하면 분량을 줄여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만 보관해야 한다.

나. 관리규칙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정리방법은 표준화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라. 전문직원의 보직과 훈련을 수반해야 한다.

마. 발전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능률과 보안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첩보를 활용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2. 記錄作成

먼저 새롭게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존기록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기존의 자료가 없는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존의 기록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거나 정정하는 등 재 정리를 한다.

3. 記錄의 保管

합리적인 정보기록 보관은 일단 보관된 기록을 다시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전보관

기록이 변개, 도난, 내용의 누설, 파괴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

보안과 출입자 및 열람자의 통제 등 방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효율적인 보관

(1) 조직적인 관리

정보기록은 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 처리, 유통, 정리, 보관함에 있어 그 과정이 표준화, 전문화, 간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는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기록의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서관리의 체계화, 문서작성의 표준화, 사무처리의 합리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문서관리에 관한 재정리를 완전히하여 기록의 보관과 유통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2) 인원의 확보

정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요원을 충원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기록요원 확보에는 기록전담직원 뿐만 아니라 정보기록 활용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정보기록 관리가 요청자의 수요에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 예산의 확보

예산은 현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무리 강화된 조직과 우수한 인원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예산없는 기록관리는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기타

(가) 확정적 기록

정보기록은 조직체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최대한 이용되어야 하므로 현재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속적이어서 장래성을 내포하는 정보보존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나) 집중관리

정보기록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등에서 집중관리되어야 한다.

(다) 정보기록실의 위치

정보기록실은 유사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 발휘에 적합한 중심부

이면서 폭파, 손괴,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記錄管理와 保安

기록관리의 목적은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자료나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 등을 다루는 업무인 만큼 무엇보다 보안대책을 확실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第3章 身元調査

I. 身元調査의 意義

신원조사라 함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 정보자료 수집활동이다.

II. 身元調査의 目的

신원조사의 목적은 보안이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키 위함에 있다.

III. 關聯規定

1.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2. 보안업무규정 제31조(대통령령 - 신원조사)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5조(대통령령 - 조정업무의 범위)
5.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경찰청 예규)
6. 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경찰청 예규)

IV. 區別概念

1. 범죄경력조회

범죄수사 재판 및 법률에 결격사유·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수사기능에서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지문규칙에 근거하여 개인이 요청 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거나, 법령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기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통보하여 준다.

2. 신원조회

대상자의 호적부를 관리하는 시·구·읍·면장이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개별 법령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개인의 수행사실 및 한정자산·금치산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회하여 통보하여 주는 제도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V. 身元調査 對象(보안업무규정 제31조)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VI. 身元調査 機關

신원조사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며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VII. 身元調査

1. 국내신원조사(입용 등), 여권발급신청자, 해외이주자
2. 긴급조회, 긴급신원조사
3. 주한 외국인, 출입국 교포, 귀화자·국적 회복자, 자비 또는 강제 송환된 자

第4章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법률 제7123호

2004. 1. 29

第1條 (目的) 이 法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을 최대한 保障하고 違法한 示威로부터 國民을 보호함으로써 集會 및 示威의 權利의 保障과 公共의 安寧秩序가 적절히 調和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屋外集會”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四方이 폐쇄되지 않은 場所에서의 集會를 말한다.
2. “示威”라 함은 多數人이 共同目的을 가지고 道路·廣場·公園등 公衆이 自由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를 進行하거나 威力 또는 氣勢를 보여 不特定 多數人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制壓을 加하는 行위를 말한다.
3. “主催者”라 함은 自己 名義로 自己 責任 아래 集會 또는 示威을 開催하는 사람 또는 團體를 말한다. 主催者는 主管者를 따로 두어 集會 또는 示威의 實行을 맡아 管理하도록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主管者는 그 委任의 범위안에서 主催者로 본다.
4. “秩序維持人”이라 함은 主催者가 自身을 補佐하여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를 유지하게 할 目的으로 任命한 者를 말한다.
5. “秩序維持線”이라 함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을 보호하고 秩序維持 또는 交通疏通을 위하여 集會 또는 示威 場所나 行進區間에 일정한 區劃을 정하여 管轄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 設定한 띠·防柵·車線등의 境界標識를 말한다.

第3條 (集會 및 示威의 방해 금지)

- ①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을 방해하거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 이 法の 規定에 의한 任務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轄警察官署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管轄 警察官署의 長은 正當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 (特定人の 參加排除)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은 特定人이나 特定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에 參加하는 것을 排除할 수 있다. 다만, 言論機關의 記者는 그 出入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記者는 身分證을 제시하고 記者임을 표시한 腕章을 着用하여야 한다.

第5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集會 또는 示威
2. 集團的인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直接的인 威脅을 加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된 集會 또는 示威를 할 것을 宣傳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등)

①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連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略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

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管轄 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하 "管轄 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 申告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第7條 (申告書의 補完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補完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通告는 補完할 사항을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 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8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管轄 警察官署長은 申告된 屋外集會 또는 示威가 第5條第1項,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사항을 補完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할 集會 또는 示威라고 인정될 때 그 申告書를 접수한 때부터 48時間이 내에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主催者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時間과 場所가 競合되는 2이상의 申告가 있고 그 目的으로 보아 서로 相反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 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9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통고에 대한 異議申請등)

①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당해警察官署의 直近 上級警察官署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警察官署의 長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 異議申請人에게 교부하고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書를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 警察官署長의 금지통고는 遡及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違法 또는 부당한 것으로 裁決되거나 그 效力을 잃게 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은 최초로 申告한 대로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時機를 놓친 경우에는 日時를 새로이 정하여 集會 또는 示威의 24時間전에 管轄 警察官署長에게 申告함으로써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할 수 있다.

④削除<1999.5.24>

⑤削除<1999.5.24>

第10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時間) 누구든지 日出時間전, 日沒時間후에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集會의 性格上 부득이 하여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미리 申告하는 경우에는 管轄 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日出時間전, 日沒時間후에도 屋外集會를 허용할 수 있다.

第11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에 規定된 廳舍 또는 邸宅의 境界地點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場所에서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會議事堂, 各級法院, 헌법재판소
2. 大統領官邸, 國會議長公館, 大法院長公館, 憲法裁判所長公館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第12條 (交通疏通을 위한 제한)

- ①管轄警察官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都市의 主要道路에서의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 交通疏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交通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道路를 行進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交通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交通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의2 (秩序維持線의 設定)

-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管轄警察官署長은 集會·示威의 보호와 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官署長이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때에는 主催者 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꽁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第13條 (適用의 排除) 學問·藝術·體育·宗教·儀式·親睦·娛樂·冠婚喪祭 및 國慶行事に 관한 集會에는 第6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4條 (主催者의 준수사항)

- ①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에 있어서의 秩序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自身을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18歲이상의 者를 秩序維持人으로 任命할 수 있다.
 ③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秩序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集會 또는 示威의 終結을 宣言하여야 한다.
 ④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銃砲·爆發物·刀劍·鐵棒·棍棒·石塊 기타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는 器具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申告한 目的·日時·場所·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逸脫하는 행위
 ⑤屋內集會의 主催者는 擴聲器 設置등 周邊에서의 屋外參加를 誘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 (秩序維持人의 준수사항등)

- ①秩序維持人은 主催者의 指示에 따라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秩序維持人은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秩序維持人은 參加者등이 秩序維持人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등을 着用하여야 한다.
 ④管轄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人의 數를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와 協

議하여 적정수로 調整할 수 있다. 이 경우 秩序維持人의 數를 調整한 때에는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調整된 秩序維持人의 名單을 集會 또는 示威의 開催전에 管轄警察官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16條 (參加者의 준수사항)

①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 秩序維持를 위한 指示에 따라야 한다.

②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第14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警察官의 出入)

①警察官은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에게 通報하고 그 集會 또는 示威의 場所에 正服을 着用하고 出入할 수 있다. 다만, 屋內集會 場所에의 出入은 職務執行에 있어서 緊急性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集會나 示威의 主催者·秩序維持人 또는 場所管理者는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18條 (集會 또는 示威의 解散)

①管轄 警察官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는 상당한 時間이내에 自進 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集會 또는 示威
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終結宣言을 한 集會 또는 示威
3.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8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된 集會 또는 示威
4. 第8條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제한, 第10條 단서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에 위반하여 交通疏通등 秩序維持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招來한 集會 또는 示威

5.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秩序를 유지할 수 없는 集會나 示威

②集會 또는 示威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參加者는 지체없이 退去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進解散의 要請 및 解散命令의 告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條 (罰則)

①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軍人·檢事 또는 警察官이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5條第1項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5條第2項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그 情을 알면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0條 (罰則)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者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處罰한다.

1. 主催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
2. 秩序維持人은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3. 그 情을 알면서 참가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第2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개정 1999.5.24>

1. 第14條第5項, 第15條第2項, 第16條第2項 또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허위로 하고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한 者
3.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主催者 또는 秩序維持人이 참가를 排除하였음에도 그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
4.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한 秩序維持線을 警察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正當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侵犯하거나 損壞·隱匿·移動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
5. 제12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

第22條 (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罰則의 適用) 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그 代表者를 主催者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그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이 법 시행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章 火焰瓶使用等の處罰에 관한法律

제정 : 1989. 6. 16 법률 제4129호

개정 : 1991. 3. 8 법률 제4338호

I. 序論

1.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972년도에 학생시위에서 화염병이 잠시 나타난 후 곧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2. 12 학원자율화 이후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세력들이 예외없이 화염병을 가두소요, 공공건물 점거 및 파괴, 방화 등의 투쟁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직접적인 법령이 없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화염병의 투척행위가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게 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89. 5. 3 부산 동의대 참사의 비극적인 사건발생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법이 제정되었다.
3. 본 법률은 처벌보다는 예방효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참다운 민주질서가 정착되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I. 條文 解説

第1條 (目的)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작·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의 안녕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각 개인이 그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아니할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 공공의 질서라 함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화염병”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본 조는 화염병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휘발유, 등유 등의 불붙기 쉬운 물질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조명, 은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고 이러한 조명, 은방 등의 기구도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화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알콜램프, 라이터 등)이러한 생활 필수기구와 화염병과는 그 형상이나 구조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 그 구별을 명확히 하고 또한 본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화염병의 구성요소
· 「유리병·기타의 용기」
유리병 외에도 陶器製, 磁器製, 플라스틱製, 폴리에틸렌製 등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쇄성을 갖는 용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파쇄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